

의안번호	제 740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 
폐지조례안

발 의 자	김국기 의원
발의연월일	2021년 5월 31일

# 충청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(김국기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740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1년 5월 31일

발 의 자 : 김국기 의원

찬 성 자 : 박성원, 최경천, 김영주,  
이수완, 임동현, 정상교 의원

## 1. 제안 이유

「충청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하여 특별장학생을 선정하여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하였으나, 2021학년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더 이상 조례의 존속이 무의미하게 되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 내용

가. 충청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다. 관계부서 협의: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유아특수복지과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1-55호

(2021. 5. 21. ~ 2021. 5. 26.)

2) 규제심사: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 없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      호

## 충청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계 법령

## □ 초·중등교육법

[시행 2021. 3. 23.] [법률 제17954호, 2021. 3. 23., 타법개정]

제10조의2(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)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(無償)으로 한다.

1. 입학금
2. 수업료
3. 학교운영지원비
4. 교과용 도서 구입비

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,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9. 12. 3.]

[시행일]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

1. 2020학년도: 고등학교 등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
2. 2021학년도 이후: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